**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**

**(갑)** *홍길동*

 *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01, 3층 (역삼동)*

**(을)** *주식회사 양수도*

 *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01, 3층 (역삼동)*

 *대표이사 홍길동*

“갑”이 운영하고 있는 *서울특별시* 소재 *개인사업자 상호*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“을”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**제 1 조 (목적)** 본 계약은 “갑”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“을”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목적이 있다.

**제 2 조 (사업승계)** 사업 양도양수일 현재 “갑”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“을”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“갑”이 양도양수일 전에 제조(용역) 판매(제공)한 제품(서비스)이 사업 양도양수일 이후에 반품될 경우에는 “을”이 책임지고 인수 처리토록 한다.

**제 3 조 (양도양수 기준일)** “을”은 *개인사업자 상호 또는 서비스*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 “갑”의 장부상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.

**제 4 조 (양도양수가액)** 양도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(순자산가액)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.

①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장부가액으로, 영업권 등 무형자산은 감정평가액으로 수정 평가한다.

② ①항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수정평가하여 반영한다.

 **제 5 조 (종업원의 인계)** “을”은 “갑”의 전 종업원을 신규 채용에 의하여 전원 인수, 계속 근무하게 하고 사업 양수일 이후 퇴직자가 발생하면 종전 “갑”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연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.

**제 6 조 (양도양수 대금지급)** 양도양수 금액은 제4조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금액,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별도로 약정한다.

**제 7 조 (협조의무)** “갑”은 “을”이 사업을 양수함에 따른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 8 조 (기타)** 본 계약 규정 이외에도 사업 양도 양수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“갑” “을”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
이상의 계약 내용을 “갑” “을” 쌍방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 년 월 일

 **갑 :** *홍길동*

 *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01, 3층 (역삼동) (인)*

**을 :** *주식회사 양수도*

 *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01, 3층 (역삼동)*

 *대표이사 홍길동 (인)*